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3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권영세·서일준·이인선

구자근 • 유영하 • 김상훈

인요한 · 김소희 · 주호영

조승환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구조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또한, 항공기급 대형드론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공역을 동시에 사용하고 국제 간 이동도 가능하여 현재의 항공 관련 법률 체 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형드론 외 중소형드론 은 유인항공기와 공역이 분리·운영될 뿐 아니라, 국내 비행에 한정되 고 운영 성격이 달라 현행「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중소형드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및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신고, 조종자격 및 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중소형드론에 대한 안전등 대국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 중소형드론의 관리 및 조종자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안 6조 및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나. 중소형드론 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다.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

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조종자 증명을 제외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마.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바. 중소형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한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사.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아. 중소형드론 활용 추세에 맞추어 사용운송사업, 정비업 및 대여업으로 구분하고, 등록·합병·휴폐업 등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형드론 관련 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과 중소형드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형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비행체중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자체중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하며, 중형드론과 소형드론으로 구분한다.
 - 2. "중소형드론사고"란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중소형드론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중소형드론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다. 중소형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중소형드론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라. 중소형드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산 피해
- 3. "중소형드론 안전위해요인"이란 중소형드론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 4. "중소형드론사업"이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중소형드론정비업 및 중소형드론대여업을 말한다.
- 5.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사용업무"라 한다)
 - 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이하 "운송업무"라 한다)
- 6.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7. "중소형드론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중소형 드론 또는 부품 등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을 말한다.
- 8. "중소형드론정비업자"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소형드론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9. "중소형드론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중소형 드론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중소형드론대여업자"란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중소형드론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중소형드론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중소형드론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군용 중소형드론 등의 적용 특례) 군용·세관용 또는 경찰용 중소형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국가기관등 중소형드론의 적용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등과 계약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중소형드론을 재해·재난 등

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예방,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제1항을 이 조 제1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 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제1절 중소형드론 관리 및 조종자

- 제6조(중소형드론 신고) ① 중소형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중소형드론 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게·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형드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번호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은 해당 중소형드론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비행 시 신고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 서의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소형 드론소유자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중소형드론 변경신고 등) ①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형드론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형드론이 멸실되었거나 중소형드론을 해체(정비·수리·개조,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하는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⑥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중소형드론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최고 후에도 해당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이 말소신고

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소형드론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중소형드론 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중소형드론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중소형드론의 안전성 기준
 - 2. 중소형드론의 통신기술 기준
 - 3. 중소형드론의 무선설비 등을 위한 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전 파법」 제45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중소형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9조(중소형드론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중소형드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 ①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중소형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중소형드론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중소형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형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위한 중소형드론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중소형드론 조종자로서 업무(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소형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

소형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 5.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을 알 선한 경우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9.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10.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11.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이 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중소 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중소형드론 조종 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중소형드론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이하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중소형드론 조종연습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 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 외의 중소형드론 조종연습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은 중소형드론 조종교육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의 대여 등에 관하여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형드론 조종"은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경우
- 2. 교육훈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보고한 경우
- 3. 중소형드론 조종교육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소형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제1항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하게 하거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한 경우

- 5.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7.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수행하게 하거나 중소형 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빌려준 경우
- 8.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조종교 육증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경우
- 9.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 류등의 영향으로 중소형드론을 조종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10.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11.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이 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교육을 한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의 특례)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중소형드론의 종류·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중소형드론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이하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이 중소형드론 조종 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중소형드론 조종자의 육 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교육훈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보고한 경우
- 4.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6. 제6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이 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교육을 한 경우
- ⑧ 제7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2절 중소형드론의 운용

- 제15조(중소형드론 비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형드론 비행규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2. 가시권 비행(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비행을 말한다)에 관한 규칙
 - 3. 비가시권 비행(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을 말한다)에 관한 규칙
 - 4. 군집비행에 관한 규칙
 -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 ② 중소형드론조종자 또는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비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소형드론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2.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7조(중소형드론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중소형드론 조종자는 중소형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중소형드론 조종자는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형드론 조종자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비행승인"이라 한다)을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형드론 특별비행을 위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1.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비행
- 2. 비가시권 비행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18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19조(무선설비의 장착·운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 인 중소형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0조(사고보고) ① 중소형드론 조종자는 중소형드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형드론 조종자가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소형드론소유자등이 중소형드론사고를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사고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 ·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 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중소형드론 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중소형드론 안전자율 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중소형드론 안전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소형드론 안전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이 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형드론 안전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중소형드론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법의 위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 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23조(안전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중소형드론 제작 또는 정비 등을 하는 자
 - 2. 이 법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업을 등록한 자

- 3. 중소형드론소유자등
- 4. 중소형드론 조종자
- 5.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
- 6.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 7. 그 밖에 중소형드론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중소형드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자격을 갖춘 중소형드론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 2. 이착륙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 3. 중소형드론 보관장소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 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 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형드론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중소형드론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중소형드론 조종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소형드론의 안전운 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 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소형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중소형드론을 중소형드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다만, 제42조에 따른 중소형드론정비업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보험회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 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중소형드론의 사업관리

제1절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제25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등록)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 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중소형드론만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중소형드론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26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없다.
 -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 3.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

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39조에 따라 중소형드론 사용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27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중소형드론사용운 송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제28조(서류 등의 비치)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는 등록증 및 요금

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관리규정 승인 등)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중 운송업무를 하는 자(이하 "중소형드론운송업자"라 한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중소형드론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중소형드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형드론운송업자에게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드론운송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운송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 제30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① 중소형드론운송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 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형드론운송업자는 운임표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열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비행로등 지정과 운영) ① 중소형드론운송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중소형드론 비행로 또는 비행구역(이하 "비행로등"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비행로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 항에 따른 비행로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중소형드론운송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비행로등으로 중소형드론을 비행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행로등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비행로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중소형드론운송업자의 적용 특례 및 지원) ① 중소형드론운송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승인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행로등의 지정 승인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업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 형드론운송업자에게 안전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양도·양수)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 사업자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 1. 양수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인이 제39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3. 양도인이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중소형 드론사용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5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가 다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또는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6조(상속)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 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37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휴업)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8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폐업) 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 2. 폐업으로 중소형드론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39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 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 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중소형드론 사용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7. 제2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및 요금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자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운용한 자
 - 다. 안전관리규정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9.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0.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둔 경우
- 1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로등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14.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4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8.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제40조(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중소형드론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중소형드론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 4. 그 밖에 중소형드론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 제거 및 서비 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가 제39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

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절 중소형드론정비업 등

- 제42조(중소형드론정비업의 등록) ① 중소형드론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백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정비인력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형드론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중소형드론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6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4조제8항에 따라 중소형 드론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3조(정비능력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형드론정비업자가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의 정비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능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능력인정서를 받은 자로부터 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받은 중소형드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9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비능력 인정의 기준 및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중소형드론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중소형드론정비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② 중소형드론정비업의 서류 등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하다.

- ③ 중소형드론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④ 중소형드론정비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 ⑤ 중소형드론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⑥ 중소형드론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⑦ 중소형드론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⑧ 중소형드론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39조 를 준용한다.
- ⑨ 중소형드론정비업의 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⑩ 중소형드론정비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45조(중소형드론대여업의 등록) ① 중소형드론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백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중소형드론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형드론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중소형드론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6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6조제8항에 따라 중소형드론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6조(중소형드론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중소형드론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② 중소형드론대여업의 서류 등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 ③ 중소형드론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④ 중소형드론대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 ⑤ 중소형드론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⑥ 중소형드론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⑦ 중소형드론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⑧ 중소형드론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39조

를 준용한다.

- ⑨ 중소형드론대여업의 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① 중소형드론대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47조(중소형드론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형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중소형드론정비업에 사용하는 경우
 - 3. 중소형드론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의 취소
 -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 3. 제14조제7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 등록의 취소
 - 5. 제4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정비업 등록의 취소

- 6. 제4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대여업 등록의 취소
- 제4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형드론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증명·허가·인가·승인·인증·등록·인정 또는 검사(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증명서 · 인정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과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교육을 한 자
 - 2.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 또는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자
 - 3. 제18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사고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안전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 업을 경영한 자
- 3.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중소형드론사용운송 사업자
- 4.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정비업을 경영한자
- 5.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중소형드론정비업자
- 6. 제4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대여업을 경영한 자
- 7. 제4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중소형드론대여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2. 제47조를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자
- 2. 제4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중소형 드론정비업자
- 3. 제46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중소형 드론대여업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자
- 2.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중소형드론을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제5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52조제3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제52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9조에 따른 무선설비 장착·운용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5. 제23조제7항에 따른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중

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자

- 8.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한 자
- 9.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
- 10. 제28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 1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자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운용한 자
 - 다. 안전관리규정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 14. 제30조제4항에 따른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 짓 사항을 적은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둔 자
- 1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자

- 나. 비행로등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다. 비행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로등을 변경한 자
- 16.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행로등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7.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 18. 제4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 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 19. 제4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 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 21. 제4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자(제52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 고 조종교육을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 조종 또는 조종교육을 수행하게 하거나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 또는 중소 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빌려준 자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소형드론 조종 또는 조종교육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 또는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빌린 자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제52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을 이용하여 비행한 자 또는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 하면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소형드론을 이용하여 비행하게 한 자
-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

- ④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중소형드론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중소형드론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 소형드론소유자등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형드론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중소형드론 조종자 또는 그 중소형드론 소유자등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중소형드론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 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에 따라 안전성인 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중소형드론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 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번호는 제6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중소형드론 비행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비행승인을 받은 자는 제16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무 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조종자 증명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받은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으로 본다.

- 제7조(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이하 "전환교육"이라 한다)을 이 법 시행 후 4년까지 이수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을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전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 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소형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 제9조(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중형드론 사용운송사업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중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초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운송 업무에 한정한다)는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비행로등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인받아야 한다.
- 제10조(중소형드론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2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 공레저스포츠사업(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로 한정한다)의 휴업을 신고한 자는 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중소형드론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 에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대여업(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무인비행장치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에 한정한다)을 등록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항공기대여업(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무인비행장치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에 한정한다)의 사업계획서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사업 법」에 따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대여업(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무인비행장치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에 한정한다)의 휴업을 신고한 자는 제46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0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0의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중소형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본문 중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중소형드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경량비행장치가"를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중소형드론이"로 한다.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3제2항 중 "초경 량비행장치를"을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중소형드론을"로 한다.

③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경량비행장치를"을 "초경량비행장치, 「중소형드

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중소형드론을"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 전단 중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를 "같은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125조 전단 중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

제2조제1항제4호 중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사업법」"을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소형드론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 4.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 및 제12조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 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정보
 - 5.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 5의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중소형드론정비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 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 5의3.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소형드론대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양 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 4.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 5.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

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법률 제20295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11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항에 따른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 소형드론에 대한 중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 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 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를"을 "초경량비행장치,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을"로 한다.

⑦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 치사용사업"을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으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무인비행장치"를 "중소형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을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을"로,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제6조에 따른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⑨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6항 중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항공기대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한다.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를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이하 "중소형드론"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무인비행장치"를 각각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 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을 "항공기대여 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7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⑩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패러 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패러글라이더 및 기구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 중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 치"를 각각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중소형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중소형드론"이란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을 말한다.

제127조제2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8조 단서 중 "무인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로 한다.

제129조제4항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을 "초경

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로 한다.

제12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의2를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를 " 「항공사업법」 제2조제22 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13호의2, 같은 항 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을 "초경량비행장치·중 소형드론·비행장"으로 한다.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6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경량비행장치사고"를 "경량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및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을 "「공항시설법」・

「철도안전법」 및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를 "항공기, 경량항 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중소형드론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법률 제20052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및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형드론사고"로 한다.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무인비행장치"를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무인비행장치"를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무인비행장치"를 "중소형드론"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형드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안전법」, 「항공 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용 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 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